

◆ D-58 민사합의 실무

1. 합 의

1) 합의의 의의

합의란 원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,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존 재하는 분쟁을 사적으로 해결하는 약정을 의미함. 합의의 내용으로는 보통 “**본건으로 인하여 민·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**”는 부제소특약 및 권리포기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. 부제소특약이 인정되면 그 소는 각하됨. (대법원 1992. 3. 10, 92다 589) 판례에서는 합의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그치기로 약정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음.

2) 합의의 당사자

- ① 피해자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: 본인과 그 가족(위자료 청구권 있음)
- ②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: 산재법상의 1순위자 및 민법상 상속권자

3) 합의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

① 유가족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
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부
- 피해자의 호적등본 3부.
-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사망전 및 후 각3부.
- 합의금을 먼저 수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급여수령위임장 1부.
- 합의당사자의 인감증명서. 인감도장 (합의용, 위임용) 3부
- 사고사실확인서 (관할경찰서 발행) 3부.

② 회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

- 평균임금확인서류 : 노임대장의 경우 재해이전 4개월분 및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해이전 1년분의 상여금대장 갑종근로소득세납세실적증명원, 사실확인서등
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
- 입사관련서류 : 근로계약서, 출역일보, 하도급계약서
- 사고사실확인서류 : 목격자진술서, 사고보고서,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 사실확인서, 작업일지

- 유족급여 일시금 청구서, 장의비 청구서, 장제실행확인서, 보험급여수령위임장(위임수령시)작성하여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함.
- 민사합의를 선행할 경우 합의서 작성 → 공증한 합의서 사본.
- 회사에서 합의금 전액을 해당지급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위임수령 할 경우
보험급여수령위임장에 수급권자의 날인을 받고, 회사(원수급인)의 통장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현장관할지사에 청구하면 회사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전액이 지급됨.

4) 합의시 주의사항

- ①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합의후 증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권리포기조항의 효력 부정하고 있음으로, 합의시 “휴유장해진단서”를 반드시 첨부하고 휴유증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임.
-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, 의사표시의 전제사실에 중대한 착오, 합의약정의 불이행의 경우 합의를 효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음.

5) 민사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

-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.
(민법 제766조 제1항)
- 손해를 안날이라 함은 상해를 입은날을 의미함. 다만 그후 휴유증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유증이 발생하였음을 안날을 의미함.
(대법원1992.4.14, 92다 2011외)